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u>선</u>	기관(부서)의 장
람	

<u> </u>	Н
0	工

http://www.daedeok.go.kr

제2024-51호 2024. 8. 9.(금)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90호)

공 고(4)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826호) 2

행정예고(1)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장비 클런지킴이(CCTV)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4-825호) 12

		1			
고라		1			
0 1					
		1			

발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1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90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 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O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신탄진동 195-3	신탄진로756번길 52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5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8. 9.
오정동 56-4	한밭대로1033번길 50	건물신축	한밭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0,33 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8. 9.
목상동 865-4	대덕대로1486번길 198 (목상동)	민원인 요청	(분할)민원인 요청으로 분할 변경	2024. 8. 9.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2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 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3. 기 간: 2024. 8. 9. ~ 8. 30. (21일간)
-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 대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4. 8. 30.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u>사전통지서</u>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 불가 사유
강*수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09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꽁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김*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99번길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꽁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정*영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203번길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꽁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서*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꽁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김*섭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꽁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2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3. 기 간: 2024. 8. 9. ~ 8. 30. (21일간)
-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u>부과 고지서</u>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 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 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 6 -

[별첨1]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u>부과 고지서</u>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불가 사유
김*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99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200,000	폐문부재
㈜스마트렌트카	광주광역시 서구 금부로99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꽁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28호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 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3. 기 간: 2024. 8. 9. ~ 8. 30. (21일간)
-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 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u>독촉고지서</u>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 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최 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불가사유
김*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꽁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 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34호

시설물 멸실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장 폐 쇄)하고자 처분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81조(청문)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4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고기간: 2024. 8. 9. ~ 2024. 8. 23.(15일간)
-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
-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일 반 음식점	장모님아구	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58번길 91, 1층 (석봉동)	영업시설 멸실	영업장 폐쇄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청문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영업소 폐쇄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6902.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25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장비 클린지킴이(CCTV) 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클린지킴이(CCTV) 이전 설치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클린지킴이(CCTV) 이전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2. 관련 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철거장소	
오정동 293-3	
중리동 383-11	
중리동 420	

이전장소	
신탄진동 744	
읍내동 544	
장동 133-5	

4. 촬영범위 및 시간

가. 클린지킴이(CCTV) 설치구역 반경 5~20m, 24시간 센서 감응식 촬영

→

- **5. 행정예고기간**: 2024. 8. 9.(금) ~ 8. 26.(월) / 17일간
- 6. 공고방법: 대덕구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deok.go.kr)

7. 의견제출

- 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식 참조
 - 1)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2)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기간: 2024. 8. 26.(월)까지
-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등
- 라.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별관 3층 자원순환과

(전화 042-608-6834, FAX 042-608-3850, E-mail: guswjd8569@korea.kr)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쓰레기	불법투	기 예방	단속 들	관기킴o	·(CCIV) 이	선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					주민(법인) 등록번호	-
의선 세출사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	리치				의견제	출 내용	
쓰레기 불법	卓투기 예	방 CCT	V 이전	과 관련	하여 위	와 같이 의	견을 제출합니다.
		2	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끝.